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무역구제정책팀 나기용 팀장, 이승준 사무관(5554)
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 이준우 주무관(5563)
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 박종희 사무관(4960)
불공정무역조사팀 이상준 팀장 위문이 사무관(5584), 이태준 사무관(5585), 김상태 주무관(5586)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3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

–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등산복 상표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13.8.21(수), 제318차 회의를 개최하여,

○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하고,

○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등산복 상표권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42~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합판이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판과 교차토록 적층하여 만든 제품으로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으로 사용됨

* 조사개시('12.11.9) → 현장실사('13.6) → 공청회('13.7.24) → 최종판정('13.8.21)

○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을 보면 산동신강 4.36%, 창해 4.14%, 지엔타오 3.27%, 뤼천 2.42%, 난닝진룬 5.11%, 리안윤강 얀타이 27.21%, 그 밖의 공급자 17.48% 등임

○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게 됨

□ 동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합판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합판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약 8천7백억원**이며, 이중 **중국산 수입품이 38%정도**를 차지함

* 1980년대까지 국내에는 90여개의 합판 생산업체가 있었으나 동남아 및 중국산 저가 합판 수입으로 현재에는 5개업체(성창기업, 선창산업, 이건산업, 신광산업, 동일산업)로 위축되었으며,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30%에 미달

2 영업비밀침해 및 상표권침해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 **'노래방용 음향증폭기'의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등의 거짓표시 판정 件**

○ 무역위원회는 K씨가 S사 근무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제조한 음향증폭기를 베트남에 수출하면서, S사의 등록상표(JARGUAR 자 가)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상의 안전인증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건에 대해

○ 해당물품의 수출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75,818,569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본건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고의적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등산복'의 상표권 침해 판정 件

○ 무역위원회는 A사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ARC'TERYX)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복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 A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함

□ 또한, 무역위원회는 돈육가공품 제조업체(H물산)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 한-EU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음

○ 판정을 받은 기업은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붙임> 1. 중국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참고자료
2.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참고자료
3. 등산복 상표권침해 참고자료
4. 무역조정지원 신청관련 참고자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팀 위민이 사무관(☎ 2110-55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국産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참고자료

□ 조사개요

○ 신청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 회원사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 조사대상업체 : 중국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社 등

○ 조사대상물품
- 품명 : 합판(Plywood)
- 용도 : 주로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타설용으로 사용되고 그 외 건축 내·외장재, 가구, 마루판, 수출용포장박스 등으로 사용됨

□ 조사 경과

○ '12.10.8 : 덤핑방지부과관세 신청

○ '12.11.5 :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 공고 : '12.11.9)

○ '13.7.24 : 공청회

○ '13.8.21 : 최종 판정 (제318차 무역위원회)

□ 국내시장 현황

○ 국내생산자 : 성창기업(주), 선창산업(주), 이건산업(주), 신광산업(주), 동일산업(주) 등 5개사

○ 수요자 : 건축업체, 가구업체, 포장용박스 제작업체 등

○ 국내시장 규모('12년기준) : 1,546,670m^3 / 8,700억원

□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내용

○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 3년

○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

업체명	산동신강	창해	지엔타오	뤼천	난닝진룬	리안윤강 안타이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	4.36%	4.14%	3.27%	2.42%	5.11%	27.21%	17.48%

<붙임2>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영업비밀·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 참고자료

□ 조사개요

○ 당 사 자 : 신청인 S사, 피신청인 P사(K씨)

○ 조사대상물품 : 음향증폭기(HS단위: 8518.40.0000)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 영업비밀 침해, 상표권(JARGUAR 자 가) 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한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

○ 조사대상 기간 : '10. 1. 1. ~ '13. 1. 14.

○ 조사개시일 : '13. 1. 15.

□ 판정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품질 등의 거짓표시)에 해당

○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3년간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61,293,717원의 30/100에 해당하는 48,388,115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52,900,598원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7,935,090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 품질 등의 거짓표시 불공정무역행위

- (시정조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인증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의 수출행위 중지(법 제10조)

- (과징금) 위반물품의 연평균 거래금액 129,969,095원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2 경감하여 19,495,364원의 과징금 부과(법 제11조)

<붙임3>

등산복 상표권 침해 조사관련 참고자료

□ 조사 개요

○ 조사신청 : '13.4.30.(조사개시결정 : '13.5.15.)

○ 신 청 인 : B사(상표 전용사용권자)

○ 피신청인 : A사

○ 조사대상물품 : 등산복(HS단위: 6201.19.0000)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의 사용상표>

번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피신청인의 사용상표
1	ARC'TERYX	ALBATROSS
2		
3	ARC'TERYX	

□ 판정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상표권 침해)에 해당

○ 조사대상물품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

- (시정조치)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등**

<붙임4>

무역조정지원 신청관련 참고자료

1 (주) H물산 (판정결과 : 긍정)

○ 무역피해품목 : 한-EU FTA관련 돈육가공품 (HS 0203)

* EU산 돈육가공품 수입금액(백만불) : ('11년 상반기) 284 → ('12년 상반기)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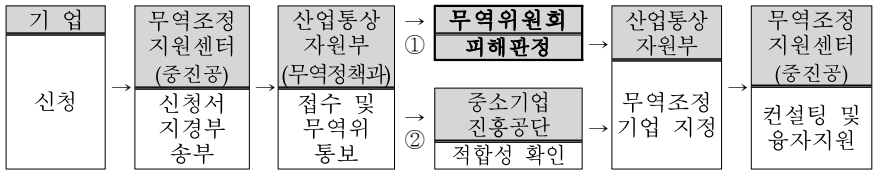
** 신청기업 매출액(억원) : ('11년 상반기) 73 → ('12년 상반기) 55(25%감소)

○ 판정사유 : 신청기업의 주거래처가 EU산 수입물품으로 납품물량을 대체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개요>

□ **(절차)**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도 >



□ **(효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컨설팅 자금의 80%를 지원하고,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컨설팅 자금 : 소요비용의 80% 지원(업체당 40백만원 한도)

○ 융자 : 시설자금(30억원내, 거치포함 8년), 운전자금(5억원내, 거치포함 5년)

* 기준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으로 '13년 2/4분기 현재 3.29%